

## II

#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 1. 미국

### 가. 연혁

#### 1) 개요

신용보험의 기본 개념인 “빚을 상속시켜서는 안된다(No man’s debt should live after him)”는 1917년 미국에서 신용보험 개발자인 Morris에 의해 착안되었다. 출시 이후 신용 거래 급증에 힘입어 신용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1951년에는 신용보험회사 200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신용보험협회(Consumer Credit Insurance Association)도 출범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신용보험을 제공(위험인수)하는 회사 유형은 종합보험회사, 전문신용보험회사, 캡티브보험회사로 구분된다.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대출기관은 은행, 금융기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우애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ies) 등이다.

1960년 이전에는 단체계약<sup>6)</sup>과 개인계약<sup>7)</sup> 주력회사로 구분되었으나, 1959년 단체계약에 대해 세법에서 특별공제를 부여하고, 업무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점차 단체보험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으나,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였다(Fagg and Hammerly 1991). <표 II-1>은 미국의 신용보험 관련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6) 단체계약에서는 대출기관인 채권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체결함.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채무자(피보험자)를 등록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수령하는 방식임(Frederick et al. 1968)

7) 개인계약에서는 차입자인 채무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체결함

〈표 II-1〉 미국 신용보험 연혁

시기	내용
1917	Morris 신용보험 개념 착안("No man's debt should live after him")
1949	NAIC 조사 착수를 통해 신용보험 문제점 파악
1951	소비자신용보험협회(Consumer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설립
1959	단체계약에 특별공제(1959 Tax Act)를 부여함으로써 단계계약 위주 시장 형성
1966	NAIC 1966 Proceedings 채택 신용보험 요율규제(prima facie rates): 적정 손해율 50% 수준
1968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The 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정
1972	은행지주회사의 신용보험 자회사 설립 허용
1979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보험의 최저 손해율을 60%로 높임
1982	저축대부조합(S&L) 신용보험 판매 허용
1983	신용조합(Credit Union)이 신용보험 자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 가능
1994	NAIC 신용보험모델규정(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에서 최저 손해율 60% 명시

자료: Fagg and Hammerly(1991)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용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1949년 NAIC는 관련 내용 조사 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 피보험자에게 보장범위와 비용을 알려야 함
-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권리 보유함
- 보험계약은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보장은 대출 전기간에 대해 제공해야 함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대출기관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안됨
- 보험계약 취소 시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함
- 계약 취소 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함

1954년 채택된 NAIC 규정이 현행 미국 신용보험 감독의 근간이 되었다. 신용보험 관련 서류<sup>8)</sup>는 주 보험감독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신용보험이 요구될 경우, 피보험자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활용하거나 동등한 보장금액의 타사 상품을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 소비자 인식 조사

미국에서 신용보험상품을 둘러싼 논쟁은 동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신용보험상품을 구입한 사람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Colorado Study에서는 가입자의 90%가 재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0%는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가입자의 20%, 미가입자의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 미국 신용보험 소비자 인식 조사

구분	주요 내용
1954 Colorado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험 가입자와 일반 국민의 신용보험에 대한 태도 조사</li> <li>•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70%는 지인 추천 의향 있다고 응답</li> <li>• 미가입자의 75%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li> <li>• 가입자의 20%는 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li> </ul>
1973 Ohio University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신용보험 이해수준 파악(구입, 가격, 보장대상)</li> <li>• 가입자는 보험 가입 사실 인지, 가입자의 대부분이 체감형 급부 선택</li> <li>•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및 지인 추천 의향 있다고 응답</li> <li>• 가입자의 20%는 신용보험 필요하다고 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주 보험감독청은 최고 요율과 기준 손해를 설정권 보유</li> <li>• 감독관 33명은 직원이 법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li> </ul>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1973년 Ohio University Study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입자는 대부분 본인의 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감형 급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의향이 있고,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미가입자의 60%가 지인에게 추천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8) 관련 내용은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역, 면책 사유 등임

### 3) 관련 연방법

채무자에게 신용보험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대출기관은 은행, 신용조합,<sup>9)</sup> 여타 금융회사, 저축대부조합<sup>10)</sup> 등이 있다. 따라서, 보험감독 외 신용보험과 관련된 다른 연방법에서도 신용보험 관련 규제를 두고 있다.

#### 가)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f 1968)에서는 신용거래 관련 보험비용(insurance charges)을 차입자의 대출금액 한도 내로 제한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비용(finance charge) 산정 시 보험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Fagg & Hammerly(1991), p. 160).

- 차입자는 대출연장 전에 보험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음
- 대출연장을 위해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 아님
- 차입자는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님을 서면으로 통지 받음
- 차입자는 서면으로 보장내역에 동의함

#### 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

195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Federal Reserve Board Regulations)은 은행지주회사가 신용보험 판매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어 1972년에는 은행지주회사가 신용보험을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9) 신용조합은 전통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에 의해 설립되고 소유·운영되며 비영리기업으로 면세 혜택이 있음. 주로 기업 및 단체가 신용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함

10) 저축대부조합은 중산층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기관으로 조합원이 상호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다) 신용조합 규정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1971년까지 대출자에게 보험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983년 들어 자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허용되었는데, 1984년에 다시 자회사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자회사 이외 보험자로부터 신용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졌다.

#### 라) 저축대부조합 규정

저축대부조합은 1982년 소비자할부 대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확대를 위해 신용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 나. 신용보험상품 구분

#### 1) 상품 유형

미국의 신용보험상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 영역에 속하는 상품은 채무자의 사망,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며, 손해보험 영역에 속하는 상품은 채무자의 비자발적 실업과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물에 대한 위험을 보장한다.

#### 가) 신용생명보험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은 차입자 사망 시 미상환 채무잔액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대출기관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므로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험금으로 차입자의 채무잔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위험관리에도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실질적 측면은 정기보험의 일부이지만, 정기보험과 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집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신용상태가 양호한 집단만 정기보험 가입을 허락할 경우 저신용자는 정기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어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장점은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단체신용보험 계

약 시 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신 보험료 수준은 정기보험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 신용상해질병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Credit Accident and Health)은 채무자의 상해, 질병 발생 시 대출, 기타 신용거래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disability)가 발생한 후 특정 기간(예: 14일, 30일) 이후부터 급부를 제공하거나, 장애 발생 첫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 다) 신용실업보험

신용실업보험(Credit Involuntary Unemployment)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중 최대 4개월이나 6개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자발적 실업, 은퇴, 장해, 고의적 행위 및 노동쟁의 등이다. 가입자는 대출실행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특정 직종 종사자(자영업자, 독립적 하도급업자, 계절 종사자)는 제외된다.

#### 라) 신용재물보험

신용재물보험(Credit Property)은 화재, 도난, 충돌, 기타 사고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되어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sup>11)</sup>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담보가액에서 현재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 2) 보험료 납입방식

신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월납으로 부과된다. 일시납은 대출 개시시점에 전체

---

11) NAIC 규정 375. Credit-Placed Insurance에 해당함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대출원리금(principal of the loan)에 가산된다. 일시납의 보험요율은 최초 가입금액에 대해 \$100당 연간 기준으로 표시한다(예: \$0.71/\$100/year). 월납은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요율은 가입금액 \$1,000당으로 표시한다(예: \$0.69/\$1,000/month).

### 3) 보험료 부담방식

신용보험계약에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주체는 채무자일 것이나, 외형상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일괄표시(non-contributory insurance)와 구분표시(contributory insurance)로 나뉜다.

일괄표시는 보험비용을 대출금액에 포함시켜 차입자가 식별할 수 없는 방식이다. 주로 대출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신용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신용조합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미신용조합(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은 조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모든 차입자에게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정책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담하는 신용보험 보험료를 원래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신용조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보험시장은 채무자인 차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보험비용을 대출금액과 구분하여 차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 II-3〉 미국 신용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부과방식	특징
일괄표시/채권자 부담 (non-contributory co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자가 보험비용을 흡수해서 단체보험방식으로 제공</li> <li>• 가입자 선택 불필요</li> <li>• 대출금리에 보험비용 가산</li> </ul>
구분표시/채무자 부담 (contributory co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보험료 부담</li> <li>• 채무자가 신용보험 가입 여부 선택</li> <li>• 대출금리와 구분하여 보험비용 납부</li> </ul>

## 다. NAIC 규제 및 감독<sup>12)</sup>

### 1) 규제 이유

미국에서도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두고,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규제 분야는 급부의 적정성, 즉 보험요율과 판매 관련 보수한도이다. NAIC는 <표 II-4>와 같이 모델법 제정 이유를 채무자 및 일반 국민 보호,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고 있다.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은 개인, 가족 또는 가계대출, 그 밖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소비자신용보험을 규제하는 법규로서 다음 사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저당 또는 신탁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선순위 모기지, 부동산 구입 또는 건설자금 대출
- 채무자에게 식별 가능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보험
- 매출채권보험

<표 II-4>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 제정 이유

번호	제목	특징
360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신용보험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li> <li>• 종목을 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보험으로 구분</li> <li>• 제외: 선순위 모기지, 신탁계약 관련 보험, 차입자에게 식별 가능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보험</li> </ul>
365	Credit Personal Property Insurance Mod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복리 증진, 법체계 구축</li> <li>• 대출기관과 보험회사 분리 유지</li> <li>• 불공정경쟁행위 최소화, 경쟁제한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li> </ul>
370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신용보험 요율(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li> <li>• 계약형태, 운영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와 일반 국민 이익 보호</li> </ul>
375	Creditor-Placed Insurance Mode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관(채권자)이 차입자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에 대해 법체계 구축</li> <li>• 대출기관과 보험회사 분리 유지, 불공정 경쟁관행 최소화 등</li> </ul>

자료: NAIC(2019)

12) Fagg and Hammerly(1991), pp. 59-61 자료를 참고함

NAIC 소비자신용보험모델법에서는 신용보험 가입 전 아래 내용을 차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Section 6. A).

- 신용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대출 승인 여부와 무관함
- 2개 이상 신용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구입하거나 패키지로 구입 가능함
- 가입조건
- 소비자가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용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입 후 30일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 보장내역
- 월납 계약의 경우 대출금리와 동일한 이자율로 보험료가 합산되어 총 상환금액이 결정된다는 사실

NAIC는 신용보험의 급부에 대해 부과한 보험료 대비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13)</sup> 1966년에는 모든 주에서 신용보험 관련 모델법이 제정되었으며, 적절한 최저 벤치마크 손해율을 5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979년 들어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기준 손해율이 60%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NAIC가 경험데이터를 집적하고, 연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II-5〉 NAIC 신용보험 가격 규제

구분	주요 내용
1957 NAIC Mortality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5년 평균 보험요율: \$0.271/100/year</li> <li>• 1956년 평균 보험요율: \$0.285/100/year</li> <li>• 기준 보험료 상품 구성: 단체계약 70% + 개인계약 30%</li> </ul>
1964 NAIC Mortality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손해율 50%하에서 기준요율이 \$0.30/100/year인 주들은 요율을 \$0.60/100/year 수준으로 인상</li> </ul>
2018 NAIC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생명보험회사(129개), 신용상해질병보험회사(116개) 대상</li> <li>• 경험통계 분석(2013~2017, 순보험료/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손해율)</li> </ul>
1978 SOA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리사회에서 신용보험위원회 구성, 경험데이터 Pilot 분석</li> </ul>
SOA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2009/2017 Credit Life Mortality Study 수행</li> <li>• 신용보험 관련 경험 데이터 분석</li> </ul>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13)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 Section 4. Determination of Reasonableness of Benefits in Relation to Premium Charge

## 2) 보험요율

### 가) 기준요율

NAIC는 신용보험 요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이하, '기준요율'이라 함) 또는 벤치마크요율 개념을 사용한다.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요율을 준수할 경우 보험급부의 적정성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 요율을 사용할 경우 감독당국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요율 산정방식은 일시납 기준과 월별 미상환잔액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시납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100당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로 표현되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sup>14)</sup>

$$S_p = \sum_{t=1}^n \left( \frac{O_p}{10} \times \frac{I_t}{I_i} \times (v^{t-1}) \right)$$

$$v = \frac{1}{1 + (dis)}$$

$S_p$  = 최초 신용보험 가입금액 \$100당 일시납 보험료

$O_p$  = 월납 미상환잔액에 대한 기준요율

$I_t$  =  $t$ 월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

$I_i$  = 최초 보험 가입금액, 대출금 원리합계와 동일한 값

$dis$  = (이자율 + 사망률)에 대한 연간 할인율<sup>15)</sup>

$n$  = 보험계약 기간 총 개월수

위 산식의 표현과 같이 실제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요율,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시납 보험료는 월납 보험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상환잔액 \$1,000당 요율로 표현된다.

14)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 Section 6. Credit Life Insurance Rates, A. Premium Rate, (2) Single premium basis

15) 3년 주기로 할인율을 점검하여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3년 평균값으로 조정함

## 나) 경험통계 보고

보험회사는 영업활동을 하는 주 감독당국과 NAIC에 매년 영업성과를 신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NAIC에서는 각 주별 승인 데이터<sup>16)</sup>를 작성한다. 주 감독당국에서는 3년 주기로 설정한 기준 손해율(loss ratio standards)과 기준요율을 점검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준이 되는 예상 손해율을 결정하고, 과거 3년간 실제 손해율과 비교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한 보험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 3년 동안 해당 주에서 적용할 개정된 기준요율을 발표한다. <표 II-6>은 NAIC가 발표한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의 손해율이다. 2008~2017년 평균 손해율은 신용생명보험 46.1%, 신용상해질병보험 38.7% 수준이다.

<표 II-6> 미국 신용보험 손해율 추이(2008~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순보험료	손해율	순보험료	손해율
2008	1,098	45.32	1,244	40.34
2009	805	45.12	939	43.45
2010	772	47.64	877	45.23
2011	758	46.98	870	41.79
2012	756	45.72	884	41.24
2013	740	47.70	892	36.72
2014	738	47.55	884	34.93
2015	731	45.21	851	33.84
2016	671	44.27	786	32.40
2017	627	45.74	770	31.64
평균	770	46.09	900	38.67

자료: NAIC(2018)

경험요율 분석을 위해 NAIC는 보험계리사회(SOA: Society of Actuary)에 신용보험위원회(Credit Insurance Experience Committee)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신용보험계약의 최근 경험사망률과 NAIC 기준(mortality reserve standard)을 비교하고, 신용보험계

16) Credit Insurance Supplement-Annual Statement Blank

약의 최근 경험사망률과 이전 경험사망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보험계리사는 산업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sup>17)</sup>

SOA가 채권자(자동차 딜러, 소매은행, 신용조합, 기타 금융회사)가 판매한 신용생명보험의 경험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7>과 같다. 가입금액 평균값(Average Inforce Exposure)은 2002년 조사(\$7,361) 대비 2009년 조사(\$8,568)에서는 상승하였으나, 2017년 조사(\$4,674)에서는 크게 하락하였다. 분석 대상 전체 계약의 예정 대비 실제(Actual-to-Expected) 위험손해율은 금액 기준 63~76% 수준이며, 건수 기준 63~81% 수준이다.

<표 II-7> SOA 신용생명보험 경험실적

(단위: 개, %, \$)

구분		2002 Study	2009 Study	2017 Study
대상 기간		1998~1999년	2003~2006년	2011~2015년
데이터 수집 시기		2001년 여름	2008년 여름, 가을	2017년 가을
자료 제공회사 수		27	41	24
(지급금 = 0 제외 회사 수)		(26)	(35)	(22)
전체	금액 기준 A/E	76.05	63.68	69.76
	건수 기준 A/E	80.09	63.41	81.10
A/E <100	금액 기준 A/E	81	74	91
	건수 기준 A/E	77	89	95
지급보험금 평균값		7,452	9,556	4,250
가입금액 평균값		7,361	8,568	4,674

주: A/E = Actual-to-Expected(예정 대비 실제 지급률, 위험손해율)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SOA는 2009년 조사 대비 2017년 조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액과 평균 보험 가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 데이터 제출회사의 특성과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들었다. 즉, 대형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을 중단하였고, 은행과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한 상품은 감소한 반면, 기타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상품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7) SOA는 가입자, 보험산업, 정책당국 및 일반 소비자에게 계리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연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슈 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함

## 다) 요율조정

신용보험상품 관련 규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준요율은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가 기준요율을 사용할 경우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요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더 높은 요율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요율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요율은 경험기간(예: 1년, 2년, 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는 없다.<sup>18)</sup>

기준요율은 각 주별로 그 주에서 인수된 신용보험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일부 주에서는 대출금융기관(은행, 신용조합, 여타 금융회사, 자동차판매회사 등) 유형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별 규제는 <부록 I> 표에 수록하였다. 기준요율은 실제 보험금 지급 원가를 측정하여 기준 손해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기준요율: \$0.55/100/year
- 기준 손해율: 50%
- 실제 손해율이 60%일 경우 보험금 지급 원가 산출

$$\begin{aligned} \text{보험금 지급 원가} &= \text{실제 손해율} \times \text{기준요율} \\ &= 60\% \times \$0.55/100/\text{year} \\ &= \$0.33/100/\text{year} \end{aligned}$$

- 개정된 신규 기준요율

$$\begin{aligned} &= \frac{\text{보험금 지급 원가}}{\text{기준 손해율}} = \frac{\$0.33/100/\text{year}}{50\%} \\ &= \$0.66/100/\text{year} \end{aligned}$$

즉, 실제 손해율(60%)이 기준 손해율(50%)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요율도 산식에 따라 인상 (\$0.55/100/year → \$0.66/100/year)된다.

---

18) 주 보험감독청이 설정한 기준요율이 절대적인 최고 요율은 아님. 만약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체 사업에서 기준 손해율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요율 인상 또는 할증을 요구할 수 있고, 감독당국이 승인할 경우 기준요율보다 높은 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 일부 주에서는 경험 손해율이 기준 손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준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mandatory downward deviation)

## 라) 주별 NAIC 모델법 채택

NAIC는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의 기준 손해율을 각각 60%로 규정하였으나, 신용실업보험과 신용재물보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NAIC 모델법을 채택한 대부분의 주는 3년마다 합리적 수준으로 예상되는 기준 손해율을 발표해야 한다.<sup>19)</sup> 주별로 기준 손해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신용생명보험은 50%, 55%, 60% 수준이며, 신용상해질병보험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시간주는 기준 손해율이 없지만, 보험회사가 할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율이 60%를 넘어야 한다. 미시시피주는 입법부가 정한 요율이 부과되기에 기준 손해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요율은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으로 구분되어 책정된다. 이들 종목 내에서 다시 사업유형, 보험 가입금액 감소 여부(고정<sup>20)</sup>/체감), 피보험자 수(단생/연생)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가입금액이 일정한 경우보다 체감하는 경우 요율이 낮아진다. 피보험자 2명인 경우는 1명 대비 1.7~1.8배 요율을 부과한다.

한편, 주 보험감독청은 자신의 신용데이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요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요율을 적용할 경우 대출 실행 후 30일 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격성(insurability)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은 전쟁, 특정 기간 내 자살, 기왕증 등으로 제한되며, 가입 제한연령 도달 시 보험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적격성을 요구하거나, 최초 보험 가입금액이 \$15,000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의 90% 값을 보험요율로 적용한다.

## 3) 판매보수 규제

판매보수에 대한 규제 여부 및 한도 설정은 각 주의 선택 사항이다. 판매보수에는 판매수수료(commission)뿐만 아니라 가구, 집기·비품 지원 등 신용보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타 방식의 보상도 포함된다.<sup>21)</sup> NAIC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총 보수한도를

19) NAIC 모델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등임(NAIC Model Regulation Services-January 2010). 이들 주는 개정 전 NAIC 모델법이나 다른 법규에 근거하여 규제함

20)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하게 고정될 경우 체감하는 방식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최초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여 부채 규모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함.

21) NAIC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의 Section 2.B(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함; "Compensation"

보유보험료(net written premium)의 30%로 설정하였다.

일부 주에서는 전체 보험료 중 총보수가 차지하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최고 한도 40% 이상인 주는 미시시피(45%), 아칸소, 인디애나, 미주리, 사우스다코다, 테네시(40%) 등이다.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최고 한도를 규정한 주는 오클라호마(40%), 캘리포니아(생명: 27.5%, 장애: 23.75%), 인디애나(33%), 메릴랜드(32%), 네브래스카(30%), 워싱턴(25%), 메인(15%) 등이다. 뉴욕주는 대출기관이 실제 수행한 서비스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텍사스주는 모든 보수 관련 비용 내역을 보험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각 주별 판매보수 규제에 대한 내용은 <부록 I>에 첨부하였다.

## 라. 주별 규제 및 감독

### 1) 뉴욕주

#### 가) 법규체계

뉴욕주는 주보험법에서 신용보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sup>22)</sup> 뉴욕주는 10년 이상 선순위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는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의 특별 규정<sup>23)</sup>을 적용한다. 또한, 단체신용보험에 대한 정의로서 '채권자나 판매업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정한 수탁자(trustee) 또는 대리인에게 발행한 계약'이라고 규정한다(s.4216(b)(3)). 뉴욕주의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보험, 신용재물보험, 신용실업보험에 대한 규정은 <부록 II>에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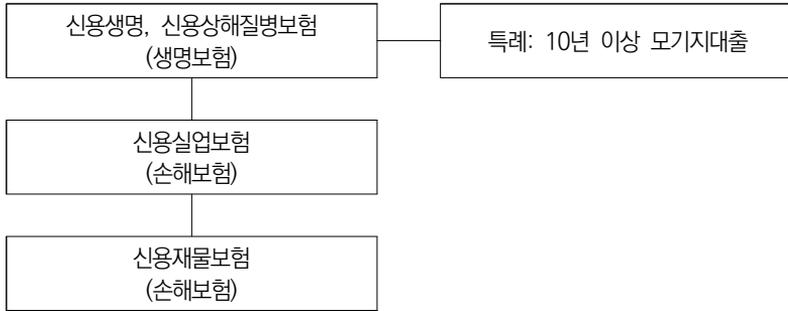
---

means commissions, dividends, retrospective rate credits, service fees, expense allowances or reimbursements, gifts, furnishing of equipment, facilities, goods or services, or any other form of remuneration resulting directly from the sale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22) 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 ISC § 4216. Group life insurance; premium requirements; notice of conversion; filing of compensation

23)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그림 II-1〉 뉴욕주 신용보험 규정 구분



## 나) 모기지대출 신용보험

뉴욕주는 10년 이상 모기지 신용생명보험(Mortgage Credit Life Insurance)의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선급, 채용자, 차압 또는 만기에 의한 모기지대출 종료
- 채무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 신용생명보험은 70세, 신용상해질병보험은 65세 도달
- 납입기일로부터 31일 내 보험료 미납
- 6개월 연체된 모기지 어음 지급
- 타 보험회사가 보장
- 단체계약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개인계약으로 전환
- 연생계약의 경우 연장자가 제한 연령 도달 시 보장 중지, 그러나 연소자에 대해서는 제한 연령 도달 시까지 보장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의 요율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건강에 대한 특정 질문을 한 경우 보험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연령 제한, 양호한 건강상태에 대한 진술, 기왕증 면책 등은 허용한다.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보험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간주한다. 최초 보험 가입금액 \$1,000에 대해 가입기간별·연령별(70세 보장한도) 월 보험요율은 〈표 II-8〉과 같

다. 연령별 보험료 수준은 32세 가입자의 경우 \$0.17(10년 만기)~\$0.26(35년 만기) 수준이며, 42세 가입자는 \$0.27(10년 만기)~\$0.63(35년 만기)이다.

〈표 II-8〉 뉴욕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단생)

(단위: \$1,000당/월)

가입연령	모기지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22세	0.11	0.13	0.15	0.17	0.19	0.19
27세	0.13	0.15	0.18	0.18	0.20	0.23
32세	0.17	0.18	0.21	0.22	0.25	0.26
37세	0.22	0.25	0.27	0.30	0.35	0.39
42세	0.27	0.34	0.42	0.50	0.57	0.63
47세	0.45	0.57	0.69	0.81	0.89	0.95
52세	0.73	0.91	1.11	1.25	1.34	1.39
57세	1.15	1.47	1.71	1.84	1.91	1.96
62세	1.91	2.29	2.47	2.57	2.63	2.66

주: 70세 보장 한도임

자료: 뉴욕주 보험법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위 표에 없는 다른 연령의 요율은 직선보간이나 외삽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연생계약의 요율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따른다.

- 연장자 단생요율의 140%
- 연장자 단생요율의 100% + 연소자 단생요율의 60%
- 기타 감독당국 승인 방식

평균보험료 부과 시 40세 이상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5세를 초과하는 연령그룹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최대 보험요율은 해당 그룹의 중앙연령이 된다. 보험료 납입주기가 비월납일 경우 월납보험료 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분기납: 월납 × 3.00배
- 반기납: 월납 × 5.95배
- 연납: 월납 × 11.79배

보험요율 조정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이 72%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금에는 사고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금과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만약 3년 연속 보험금 지급률이 72%를 하회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신용상해질병 보험 요율산정 시 기준 손해율은 단생 70%, 연생 75%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뉴욕주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서비스 항목별 보수한도를 설정하였다(185.14 규정<sup>24)</sup>). <표 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maximum percentage of prima facie written premium) 수준은 채무자 등록 5.00%, 보험금 청구 처리 0.25%, 일반관리 3.00%, 판매 1.50%이다.

<표 II-9> 뉴욕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서비스 항목별 보수규정

(기준: 가입금액 \$1,000당/월)

서비스 항목	보수 최대한도
채무자 등록	5.00%
보험금 청구 처리	0.25%
일반관리	3.00%
보험금 지급 처리	0.25%
전자기록 전송	1.00%
판매	1.50%

자료: 뉴욕주 보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 다) 단체사업비 규제

### ① 규제

뉴욕주에서는 단체신용보험을 2인 이상 복수 채권자가 지정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행한 계약으로 명시하였다. 채권자가 지정한 수탁자위원회(trustee),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단체신용보험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수탁자위원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해당 단체계약 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책무 및 의무

24)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 Title 11. Insurance, Chapter VII. Credit and Creditor Insurance, Part 185.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 단체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자 유형 또는 해당 유형의 적격 조건
- 채권자 유형별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법
- 채권자·채무자 유형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 배당금·경험률 조정 방법
- 단체보험별 보험에 가입할 채무자의 유형
- 채무자의 각 유형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방법

대출금액을 분할상환하는 채무에 대해 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기간은 3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commission)와 보수(fee)를 구분해야 한다. 단체신용생명, 단체신용상해·질병보험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보험대리인 또는 보험중개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채권자/판매업자가 지정한 수탁자는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으로 지정될 수 없고,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은 수수료를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즉 수탁자와 공유할 수 없다.

보수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가에 대한 정당성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보험료 계산(computation of premium)
- 보험료 수금(collection of premiums)
- 증명서 발급(issuance of certificates)
- 보험료 환급(making refunds)
- 보험금 지급 처리(processing claims)

뉴욕주에서는 단체신용보험과 관련한 채권자의 서비스 또는 운영관리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서비스 항목별로 가입금액 \$1,000당 최대 부과할 수 있는 비용(월 기준)<sup>25)</sup>은 <표 II-10>과 같다.<sup>26)</sup>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 이하일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신용보험을 일체형(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으로 가입했을 경우 분리형보다 더 낮은 보수한도가 적용된다.

25) maximum per month per \$1,000 of insured indebtedness

26) 뉴욕주 보험법 Part 185.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s.185.9 Commissions and fees or allowances

〈표 II-10〉 뉴욕주 단체신용보험 서비스 항목별 보수한도(대출기간 10년 미만)

(단위: \$1,000당/월)

구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	
	분리형 (not packaged)	일체형 (packaged)	분리형 (not packaged)	일체형 (packaged)
채무자 등록	0.060	0.045	0.051	0.035
환불 처리	-	-	0.010	0.007
보험금 청구	0.035	0.025	0.005	0.005
일반관리	0.007	0.007	0.013	0.011
보험금 지급	0.035	0.025	0.005	0.005
전자기록 전송	0.010	0.010	0.010	0.010

자료: 뉴욕주 보험법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 ② 신탁 사례

뉴욕주에서 신탁(trust)을 통한 단체신용생명보험 영위 사례는 은행연합회(NYBA: New York Bankers Association)가 있다. 주에 소재하는 은행들이 신탁(NYBA Group Creditors Insurance Trust)을 설립해서 대출고객에게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한다. 은행이 신탁을 통해 단체신용보험을 제공하면, 그 역할은 대리나 증개가 아니라 수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탁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수(service fee)를 부과할 수 있다.<sup>27)</sup> 이 수수료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행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의 개념과는 다르다. 적정 서비스 수수료 수준은 거래 규모 또는 보험료 대비 비증으로 표시된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탁제도를 통해 회원 은행들이 대출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상해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은행은 수수료 및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신탁은 단체보험 관련 마케팅 지원, 보험료 처리, 교육 및 운영 지원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신용보험을 제공(offering)함으로써 수수료 수입 및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10년 간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11 million 수준이다.

27) 뉴욕주 보험법 s.185.9(c)

## 2) 캘리포니아주

### 가) 규정

캘리포니아주 역시 뉴욕주와 같이 주보험법에 신용생명 및 장해보험 관련 법규를 두고 대출 또는 그 밖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장해보험에 적용한다.<sup>28)</sup> 다만, 10년 이상 대출과 무료 보험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신용보험 종목에 대한 기준 손해율을 60%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보험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계약 비용, 사업경비, 이익, 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수준이다.

### 나) 신용보험 판매채널

캘리포니아주는 신용보험상품에 특화된 대리점(credit insurance agent) 규정을 두고 있다.<sup>29)</sup> 보험상품 판매자격을 9개로 분류하고, 이 중 세부 유형으로 신용보험 판매자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대리점 또는 중개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한다.

면허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험회사가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신용보험 대리점 면허를 취득하면, 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신용재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표기해야 한다. 이들은 상환기간 10년 미만 부동산 또는 담보가치 6만 달러 미만 대출에 대한 보험계약을 취급한다. 대출 또는 신용연장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판매를 유인해서는 안된다.

신용보험 대리점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신용보험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요건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증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

28) Insurance Code, Division 1. General Rules Governing Insurance, Part 2. The Business of Insurance, Chapter 1. General Regulations, Article 5.9. Credit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29) State of California Insurance Act s.1758.97

## 마. 시장 현황

### 1) 실적

〈표 II-11〉은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된 신용보험(개인+단체, 만기 10년 미만)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가입 건수는 1975년 8만 건에서 2019년 1.3만 건으로 축소되었고, 동 기간 가입금액도 1,12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가입금액을 가입 건수로 나누어 산출한 1건당 가입금액 규모는 1975년 140만 달러에서 2019년 671.9만 달러로 높아졌다. 건당 가입금액 규모가 큰 것은 개인보험뿐만 아니라 단체보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기 10년 미만 신용보험시장의 절대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Durkin and Elliehausen 2017).

〈표 II-11〉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보험 실적 추이(만기 10년 미만, 1975~2019년)

구분	건수(만 건)	가입금액(억 달러)	건당 가입금액(만 달러)
1975	8.0	1,120	140.0
1995	5.7	2,011	352.8
2000	5.0	2,008	401.5
2005	4.0	1,656	414.0
2010	2.3	1,118	486.1
2015	1.5	761	507.6
2018	1.4	835	596.7
2019	1.3	874	671.9

주: 1)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는 종목별 가입 건수, 가입금액 통계 발표 시 개인보험(Individual), 단체보험(Group), 신용보험(Credit)으로 구분함. 신용보험에는 만기(duration) 10년 미만 신용보험만 포함하며, 대출기간 10년 이상인 신용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각각 포함시킴

2) 2005년 이후 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ies) 실적을 포함함

자료: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2020)

아울러 규제 변화도 미국 신용보험시장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통화감독청과 주 보험감독국 간 감독권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 1990년 연방대법원은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보험업무가 아닌 은행업무(두 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으로 간주)라고 판시하였다.<sup>30)</sup> 이에 통화감독청은 2002년 DCDS가 은행상품이므로 연방법에 의

한 감독을 받으며 이 서비스를 취급하는 국법은행에 대해 주 보험감독당국은 감독권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신용보험시장은 DCDS 상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시장축소로 귀결되었다(송윤아·마지혜 2016).

〈표 II-12〉는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신용생명보험 보험료 규모 추이이다. 2018년 말 16.7억 달러이며, 신용생명(8.2억 달러)과 신용상해질병보험(8.5억 달러) 비중이 대략 비슷하다. 2015~2018년 전체 생명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24% 수준이다. 이는 신용생명보험이 틈새상품으로서 여전히 효용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2〉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보험 보험료 규모

(단위: 억 달러, %)

구분	신용보험			생명보험 전체 (D)	신용보험 비중 (C/D)
	신용생명 (A)	신용상해질병 (B)	소계 (C = A + B)		
2015	9.2	9.1	18.3	6,810.8	0.27
2016	8.3	8.2	16.5	6,833.5	0.24
2017	8.1	8.3	16.4	6,913.8	0.24
2018	8.2	8.5	16.7	7,332.0	0.23
2015~2018년 평균	8.4	8.5	17.0	6,972.5	0.24

주: 1) 신용생명보험(A)는 단체 및 개인보험을 합산함

2) 신용상해질병보험(B)는 손해보험회사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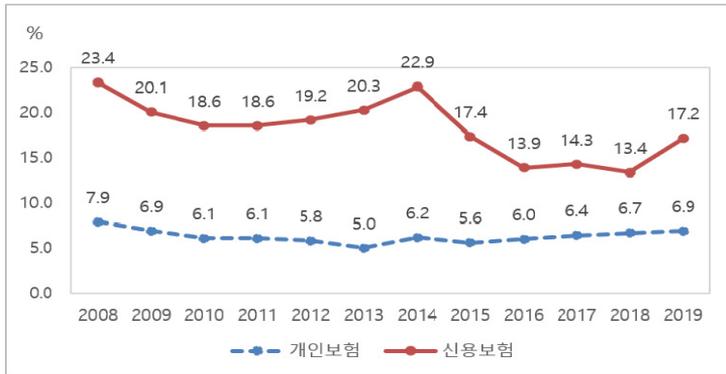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0)

## 2) 해지율

〈그림 II-2〉는 미국의 일반 개인보험과 신용보험 간 실효해지율(lapse and surrender rate)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신용보험이 개인보험보다 해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거래에 부수하여 가입하는 상품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자가 대출금액을 중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신용보험은 만기 전에 해지되며, 다른 조건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신용보험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게 된다.

30) 영국의 신용생명보험(PPI: 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은 대출, 모기지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보장함(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0. 4)

〈그림 II-2〉 미국 신용보험 실효해지율 추이



자료: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2020)

### 3) 가입 현황

미국 미시건 대학의 가계조사를 통해 나타난 신용보험 가입률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1977년과 1985년 조사에서는 할부구입 이용자의 신용보험 가입률이 60%를 초과하였으나, 2001년 이후 조사에서는 20%대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가입률은 20% 미만이어서 할부구입 이용자보다 더 낮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상품인 DCDS를 가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13〉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구분	할부구입 이용자					신용카드 이용자		
	1977	1985	2001	2012	2017	2001	2012	2017
가입	63.9	64.7	22.7	22.0	26.0	20.1	14.0	19.2
미가입	30.1	33.1	74.4	75.6	70.6	73.9	82.0	75.4
잘모름	6.0	2.2	2.9	2.4	3.4	6.0	4.0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urveys of Consumers: Durkin and Elliehausen (2017)에서 재인용함

신용보험 가입 동기가 자발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대출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팔기에 의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입집단과 미가입집단으로 구분하여 권유 여부에 대한 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14〉와 같다. 가입자가 권유(추천) 또는 강권(요구)에

의한 비중은 1977년 72.4%(권유 33.1%, 강권 39.3%)에서 2017년 19.7%(권유 9.6%, 강권 10.1%)로 낮아졌다. 즉, 2017년에는 할부구입 이용자 중 신용보험에 가입한 26.0%의 19.7%만이 가입을 권유받거나 강권(요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권유 여부(할부 구입)

(단위: %)

구분	신용보험 가입자					신용보험 미가입자				
	1977	1985	2001	2012	2017	1977	1985	2001	2012	2017
제시안함	10.6	14.8	15.4	18.7	30.0	52.2	45.2	53.3	62.7	67.4
제시함	15.0	44.7	53.2	43.5	42.9	22.6	35.5	33.9	29.5	21.3
<b>권유(추천)</b>	<b>33.1</b>	<b>16.4</b>	<b>12.2</b>	<b>17.6</b>	<b>9.6</b>	<b>17.0</b>	<b>12.9</b>	<b>4.1</b>	<b>0.5</b>	<b>1.6</b>
<b>강권(요구)</b>	<b>39.3</b>	<b>20.1</b>	<b>16.6</b>	<b>20.1</b>	<b>10.1</b>	<b>2.3</b>	<b>2.6</b>	<b>3.4</b>	<b>0.9</b>	<b>0.3</b>
기타	2.1	3.9	2.6	-	7.4	5.9	3.9	5.3	6.5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urveys of Consumers: Durkin and Elliehausen (2017)에서 재인용함

〈표 II-15〉는 응답자의 신용보험 만족도 수준이다. 긍정적 비율(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은 2001년 93.4% 수준에서 2017년 72.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불만족 비율(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10% 미만이다. 신용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을 크게 상회하여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다.

〈표 II-15〉 미국 가계의 신용보험 만족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12	2017
매우 만족	27.8	38.2	29.6
어느 정도 만족	65.6	40.9	43.3
<b>만족 소계</b>	<b>93.4</b>	<b>79.1</b>	<b>72.9</b>
보통	3.9	20.9	17.5
불만족	2.7	-	4.7
매우 불만족	-	-	5.0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urveys of Consumers: Durkin and Elliehausen (2017)에서 재인용함

## 2. 캐나다

### 가. 감독 규정

캐나다에서도 차입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다.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에서는 신용 또는 대출보험(Credit or Loan Insurance)<sup>31)</sup>에 대해 실직, 심각한 질병, 사고 또는 사망 시 대출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2)</sup> 이 상품은 모기지대출, 신용카드 또는 기타 대출이 승인될 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출기관(은행, 신용조합, 모기지 중개인, 자동차 판매업자, 신용카드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독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용, 보장 및 급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특히 정기보험에 비해 연간 비용이 높다는 점을 예시하고, 연령, 건강, 성별, 상품 유형 및 대출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옵션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보장이 시작되면 주 또는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20~30일의 검토 기간(free-look or trial)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캐나다 감독당국은 신용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구입하지 않을 경우 차별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대출기관은 적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캐나다 소재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행동 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자발적 규정이지만 각 은행에는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지정 담당자가 있고, 최고경영자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행동 강령에 따라 은행은 보험상품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이 명시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신청 중인 상품이 보험상품이라는 사실
- 보험 관련 주요 용어 및 정의
- 보험상품 관련 모든 보수·비용(fees and charges)과 부담 방법

31) 캐나다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상품은 Creditor Insurance, Balance Protection Insurance, Balance Insurance, Debt Insurance로 불림

32) <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insurance/credit-loan.html>

- 보장에 별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이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보험상품을 인수하는 원수보험회사 이름
- 보험 가입의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는 방법 및 시기
- 보장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 고객 취소 시 보험료 환불 기간
- 고객의 책무와 고객이 언제든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보장범위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약관
-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
- 보장범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 나. 상품유형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기지대출 관련 보험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16>과 같이 생명보험(Mortgage Life Insurance)<sup>33)</sup>과 손해보험(Mortgage Loan Insurance) 영역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보장 성격과 가입대상이 다르다. 대출금액은 주택 구입가격에서 최초 계약금액(down payment)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캐나다에서 주택 구입 시 계약금액이 20%를 하회할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모기지보험(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즉, 모기지보험<sup>34)</sup>은 자기자본 비율이 20%를 하회하는 주택 구입 시 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33) 모기지대출 관련 신용보험은 Mortgage Protection Life Insurance라고도 불림

34) 모기지보험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도 불림

〈표 II-16〉 캐나다 모기지대출 관련 보험상품

구분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Mortgage Life Insurance)	모기지보험 (Mortgage Loan Insurance)
신용보험 여부	신용생명보험 분류	손해보험 분류
보험금	차입자 사망 시 대출자(보험수익자)에게 모기지대출 잔액 상환	채무불이행자의 미상환부채가 담보가액 초과 시 대출자의 손실 보전
가입자	최초 계약금액이 20% 이상일 경우	최초 계약금액이 20% 미만일 경우 (즉, LTV 80% 초과 대출자)
의무 여부	선택 사항(보유 중인 다른 보험상품 활용, 주택 매각 후 상환 등 대안 존재)	대출기관 요구사항으로 선택권 없음 (20% 미만일 경우 의무)
보험요율	연령, 가입금액	연령, 가입금액 외 다른 요건 고려 (0.6~4.5%)
보험료 납입방식	일시납, 월납	일시납 또는 대출상환금액에 포함(보험료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자료: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mortgages>)

이에 비해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은 차입자가 사망할 경우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가입 여부가 선택사항이므로 Optional Mortgage Insurance Products라고도 불린다.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면, 개인보험에 비해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언더라이팅이 단순하며, 보험료도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여부도 선택 사항이다. 만약 다른 보험상품(예: 정기보험,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거나, 주택 매각 후 상환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할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잔여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유용한 상품이다.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모기지대출금액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액 상환 시 추가되어 납입된다. 연생형으로 가입하면 1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1명에 대한 보장은 지속된다. 또한,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도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중요한 언더라이팅 요인인 정기/종신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이를 가격요인에 반영할 수 있는 일반 사망보험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 다. 시장 현황

### 1) 가입률

캐나다의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단독 가입도 존재한다. 2019년 기준 사망보험 가입자의 상품유형별 분포는 <표 II-17>과 같다. 전체 사망보장보험 가입자 중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만 보유한 비중이 각각 43%씩이며, 모기지 신용생명보험만 보유한 비중도 4%에 달한다. 사망보험 가입자 중 10%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모기지 신용생명보험만 보유한 비중이 5% 수준으로 남자보다 1%p 높다.

<표 II-17> 캐나다 사망보장보험 가입자 분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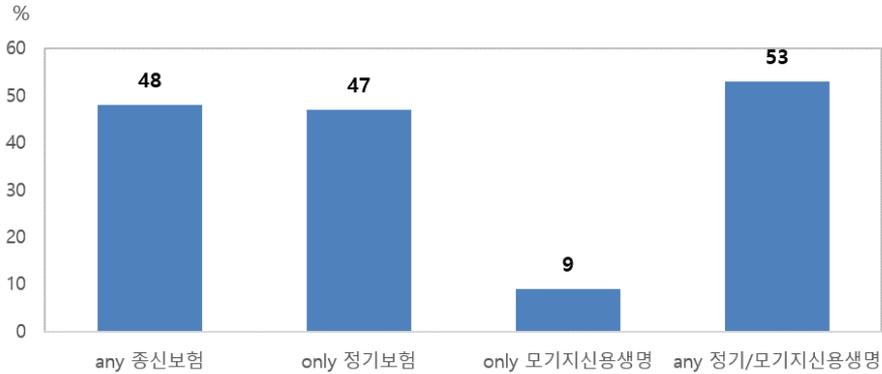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기혼(남)	기혼(여)
only 종신보험	43	41	45	43	45
only 정기보험	43	44	41	45	45
only 모기지 신용생명	4	4	5	4	4
종신 & 정기	10	11	9	9	6
계	100	100	100	101	100

자료: LIMRA(2020)

개인별 가입률은 종신보험만 가입한 비율이 48%이며, 정기보험만 가입한 비율도 47%여서 비슷한 수준이다.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만 가입한 비율도 9%에 달하며 정기보험과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비율은 53% 수준이다.

〈그림 II-3〉 캐나다 개인별 사망보장보험 가입률(2019년)



자료: LIMRA(2020)

〈표 II-18〉은 캐나다 개인 기준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2019년 종신보험 가입금액(CAD100,000) 대비 정기보험 가입금액(CAD200,000)이 두배에 달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합산한 평균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CAD300,000 수준이다.

〈표 II-18〉 캐나다 사망보장보험 가입금액(2013년 vs. 2019년)

(단위: CAD)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3 <sup>1)</sup>	2019	2013 <sup>1)</sup>	2019	2013 <sup>1)</sup>	2019
only 종신보험	88,000	100,000	110,000	120,000	71,500	100,000
only 정기보험	176,000	200,000	220,000	200,000	165,000	200,000
종신 + 정기	319,000	300,000	335,500	300,000	220,000	250,000

주: 1) 2019년 물가지수 조정된 가입금액 중위 값임

자료: LIMRA(2020)

## 2) 가입방식

캐나다에서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은 주로 대출기관을 통해 단체보험방식으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대출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번들방식 판매(Bundled sales of group credit life)라고 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모기지대출 한도 CAD500,000, 보험 가입 한도 CAD700,000 수준이며, 가입가능 연령은 18~65세, 계약

종료 연령은 65~70세로 설정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anada Life가 제공하는 상품(Home Protector)의 보장유형은 사망 + 소득보상(DI: Disability Income) 또는 사망 + 치명적질병(CI: Critical Illness) 중 선택하도록 한다. 동일 대출에 대해 DI보험과 CI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DI보험의 소득보상은 월 CAD3,000 한도로 최대 24개월 지급한다. DI보험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동일 직장에 복귀하거나, 타 직장으로 이직하면 지급을 중지한다. DI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자로 한정된다.

-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자영업자
- 출산, 육아휴직 중이지만 정규직 수행 가능자
- 계절적 취업자로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자

캐나다에는 비은행 모기지대출기관(예: First National, Home Trust)도 다수 존재하는데, Manulife는 이들이 판매한 모기지대출에 대한 신용생명보험을 인수한다. 자사 계열사인 Credit Security Insurance Agency Inc.를 통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며, Broker Support Centre Inc.는 모기지대출기관에 데이터 처리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생명보험보험료는 모기지상환 계좌와 동일한 은행계좌를 통해 수급한다. 가입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60-Day Money-Back Guarantee)를 부여한다.

### 3) 보험요율

〈표 II-19〉는 캐나다 3개 은행(Scotiabank, Royal Bank of Canada, CIBC<sup>35)</sup>)에서 판매하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최대보장한도: CAD750,000, 70세 보장) 상품의 단체계약 요율을 비교한 것이다. 5세 단위로 요율을 부과하며, 31~35세 가입 시 가입금액 CAD1,000당 보험료 수준은 CAD0.13~CAD0.15 수준이다. 연생요율은 단생보다 1.7배 정도 높게 부과한다.

---

35)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표 II-19〉 캐나다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

(단위: CAD)

연령계층	Scotiabank	Royal Bank of Canada		CIBC	
	단생	단생	연생	단생	연생
18~30세	0.11	0.09	0.15	0.09	0.15
31~35세	0.15	0.13	0.22	0.13	0.22
36~40세	0.22	0.20	0.34	0.20	0.34
41~45세	0.33	0.29	0.49	0.29	0.49
46~50세	0.44	0.40	0.68	0.43	0.68
51~55세	0.55	0.52	0.88	0.64	0.90
56~60세	0.74	0.70	1.19	0.82	1.19
61~65세	1.09	0.95	1.62	0.97	1.62
66~69세	1.54	1.63	2.77	0.97	1.62

자료: 각 사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20〉은 Canada Life의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을 나타낸 것이다.<sup>36)</sup> 최대보장한도는 CAD500,000, 65세 보장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연생요율이 단생의 1.4배 정도 수준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하여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30~34세 가입 시 가입금액 CAD1,000당 보험료(단생) 수준은 흡연자 CAD0.14인 데 반해 비흡연자는 CAD0.07 수준이다.

〈표 II-20〉 Canada Life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요율

(단위: CAD)

연령계층	흡연자			비흡연자		
	단생(A)	연생(B)	B/A	단생(A)	연생(B)	B/A
30세 미만	0.11	0.15	1.36	0.05	0.07	1.40
30~34세	0.14	0.20	1.43	0.07	0.10	1.43
35~39세	0.24	0.34	1.42	0.11	0.15	1.36
40~44세	0.38	0.53	1.39	0.18	0.25	1.39
45~49세	0.60	0.84	1.40	0.29	0.41	1.41
50~54세	0.88	1.23	1.40	0.43	0.60	1.40
55~59세	1.12	1.57	1.40	0.54	0.76	1.41
60~64세	1.34	1.88	1.40	0.63	0.88	1.40

자료: 각 사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36) Canada Life가 인수하는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Bank of Montreal, The Canada Life Assurance Company, CIBC, Duo Bank of Canada, I. G. Wealth Management, Royal Bank of Canada 등임

### 3. 일본

#### 가. 연혁

일본의 신용보험시장은 은행, 신용보증기관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채무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계약 중심이다. 1960년대 치오다생명(千代田生命)이 자동차 대출에 대해 단체정기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1966년부터 많은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을 독자적인 명칭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주택 취득이나 주택 건축용 토지 취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이지연 2018. 7).

일본의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고도 장애가 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특화된 생명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방식은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민간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단체신용생명보험(또는 여타 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단체계약 방식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리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차입자 납부금액 = 대출원금 + 이자 + 보험료)하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나 외연상 보험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특약 보험 가입방식을 선택하면, 매년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간경과에 따라 대출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감소하게 된다.

#### 나. 시장 규모

〈표 II-21〉은 2012~2018년 생명보험 시장 내 전체 단체계약 중 신용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신계약금액 중 단체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3.3%에 머물렀으나, 2018년에는 45.7%로 증가하였다.<sup>37)</sup> 보유계약 기준 단체신용보험의 비중은 2012년 46.1%에서 2018년 48.4%로 높아졌다.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보유계약금액 규모는 2012년 170.6조 엔에서 2018년 189.5조 엔으로 증가하였다.<sup>38)</sup>

37) 2018년 기준 단체신계약금액의 보험종목별 구성은 단체신용생명보험(2조 1,547억 엔, 구성비 45.7%)이 가장 높고,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1조 6,852억 엔, 35.7%), 단체정기보험(8,796억 엔, 18.6%) 순임

38) 2018년 기준 단체보유계약금액의 보험종목별 구성은 단체신용생명보험(189조 4,872억 엔, 구성비 48.4%), 단체정기보험(110조 1,595억 엔, 28.1%),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91조 5,341억 엔, 23.4%) 순임

〈표 II-21〉 일본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금액 추이

(단위: 조 엔, %)

구분	신계약		보유계약	
	가입금액	비중	가입금액	비중
2012	0.71	23.3	170.6	46.1
2013	0.97	21.5	172.3	46.4
2014	0.97	31.8	174.1	46.7
2015	1.73	44.6	176.5	47.0
2016	0.97	31.8	180.4	47.6
2017	1.63	33.0	184.7	48.1
2018	2.15	45.7	189.5	48.4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각 호

## 다. 민간 금융기관

### 1) 개요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은 〈표 II-22〉와 같다. 기본형은 차입자의 사망 또는 고도장해 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장해 보험금으로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고도장해 보장은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한 고도휴유장해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장해 상태가 되어 채무변제가 곤란해질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최고 한도는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표 II-22〉 일본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

구분	단체신용생명보험	3대 질병보장 포함 단체신용생명보험	7대 질병보장 포함 단체신용생명보험
보험료	금융기관 이용 시 대출금리에 보험료 포함	주택담보대출금리 + 0.3% 정도	연령, 대출잔액, 대출내용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담
보장내용	사망 또는 고도장해	사망 또는 고도장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또는 고도장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간경변

자료: 이지연(2018. 7)

기본형에 특정 질병을 추가하여 보장하는 방식도 있다. 3대 질병보험 부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차입자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에 걸려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보장대상 질병을 7대 질병(3대 질병 +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간경변)이나 8대 질병으로 확장한 특약도 판매되고 있다.

보험료는 주택담보대출에 가산(예: 주택담보대출금리 + 0.3%)하는 방식으로 부가한다. 단체신용생명보험 역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의무가 부과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일부 민영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모기지담보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sup>39)</sup>

## 2) 사례

〈표 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영은행인 Tokyo Star Bank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3년, 5년, 10년)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차입자는 25~65세 연령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 시 연령은 75세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은 가계기준 600만 엔, 1인가구 기준 400만 엔이며, 대출기간은 1~35년이다. Tokyo Star Bank가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증회사나 제3자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연대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추천하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해야만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Tokyo Star Bank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표준형 보험 가입이 거절된 차입자를 대상으로 비표준체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한다.

〈표 II-23〉 Tokyo Star Bank 단체신용생명보험

상품유형	보장내용
기본형 + 입원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 영구장해, 잔여생존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대출금 변제</li> <li>질병 입원 시 최대 6개월 대출금 변제(총보장기간 36개월)</li> </ul>
기본형 + 입원 + 암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보장 추가</li> </ul>
비표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형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가입이 거절된 차입자 대상</li> </ul>

자료: [https://www.tokyostarbank.co.jp/products/loan/homeloan\\_starone/pdf/outline\\_en.pdf](https://www.tokyostarbank.co.jp/products/loan/homeloan_starone/pdf/outline_en.pdf)에서 저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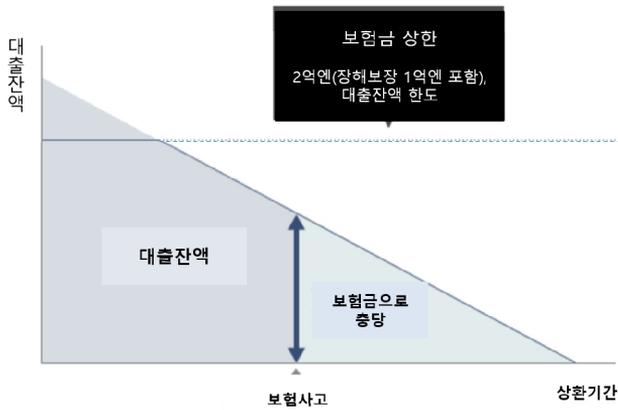
39) 모기지담보대출 안내사이트([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계열사인 SMBC Trust Bank<sup>40)</sup>는 Tokyo Star Bank와 달리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해야만 대출자격을 부여한다. 대출신청자는 20세 이상이며, 80세 도달 전에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연소득 500만 엔 이상이라는 소득조건이 있으며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1~35년이며 1년 변동금리 상품이다.

또 다른 단체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하는 사례는 미쓰이스미토모해상아이오아생명보험주식회사(三井住友海上あいおい生命保険株式會社)이다. 동사는 대출금액 5천만 엔을 기준으로 가입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대출금액이 5천만 엔 이하일 경우 의사진단과 병원진단서 없이 청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 보험 가입 한도는 2억 엔(장해보장 1억 엔 포함)이다.

단체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SMBC Trust Bank에서 부담하며 보험금 청구 수속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고보험금은 SMBC Trust Bank에게 지급하는데,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내 자살할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는 <그림 II-4>와 같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비례하여 축소된다.

<그림 II-4> SMBC Trust Bank 단체신용생명보험



자료: SMBC Trust Bank 상품설명서 자료(<https://www.smbctb.co.jp/en/product/loan/>)

40) 1986년 설립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100% 자회사로서 2013년 SMBC 신탁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 신탁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운용, 관리, 보전 등 프라이빗 뱅킹업무에 주력하며, 종업원 수는 2,112명임

## 라. 공적 금융기관

### 1) 장기고정형 모기지대출

일본에서는 장기고정형 모기지대출업무를 주관하는 공적기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한다. 일본주택금융공사(Japan Housing Finance Agency)는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공적기구이다.<sup>41)</sup> 이 기구는 민영 금융회사와 달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특화되어 있다. ‘플랫(flat)35’는 전국 300개 이상 민영기관이 주택금융지원기구와 협력하여 취급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전기간(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 대출이다.<sup>42)</sup>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민영은행, 지역신용조합, 특정 기업의 사용자이다. 대출금리는 차입자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시점의 연령, 차입자의 건강상태 및 담보자산 평가금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35년, 신청가능 연령은 20~69세, 전부상환 연령은 75~80세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을 실행한 민영 금융회사로부터 고정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증권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보증한다. 주택금융공사 사업분야는 9개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이다.

### 2) 판매방식

일본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권유한다. 대출고객을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공동 인수 대상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주택금융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활용하여 대출고객의 잔여 대출금을 변제한다. 2020년 4월 1일 기준 16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인수회사로 참여하며 지역별로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심사는 간사사로 지정된 생명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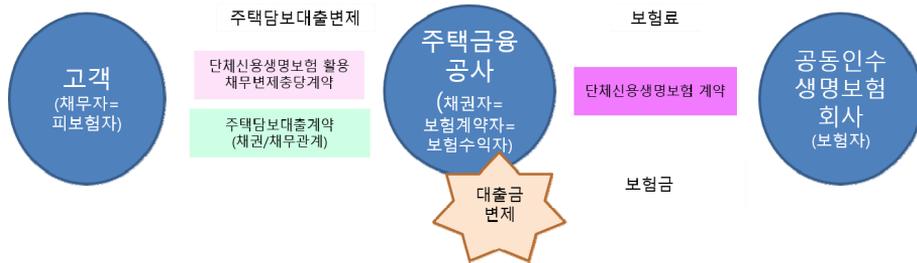
41) 이전 기구는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임

42) 플랫35 웹사이트(<https://www.flat35.com/index.html>)

43) 일본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https://www.jhf.go.jp/loan/yushi/danshin/chiikikanji.html>)

2019년 기준 ‘플랫 35’를 이용한 가구 수는 110만 가구<sup>44)</sup>이며 대출자의 보험 가입을 의 무화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선택 사항이다. 차입자가 건강상 이유 또는 기 타 사정으로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는 있 지만,<sup>45)</sup> 공사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한다.<sup>46)</sup> 그 이유는 상환 불능으로 인해 주 택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역시 차입자 사망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담보자산을 압류하여 매각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림 II-5〉 일본주택금융공사 단체신용생명보험 구조



자료: 일본주택금융공사 단체신용생명보험 안내자료(<https://www.jhf.go.jp/loan/yushi/danshin/shin-danshin/index.html>)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금융공사(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며, 차입자(채무자)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이다. 상품유형은 2가지가 있다. 기본형은 사망과 고도장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만 80세 생일이 속하는 말일까지 보장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만 70세까지 가능하다. 연대 채무자인 부부가 연생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3대 질병 보장부 단체신용생명보험은 기본형의 보장에 추가하여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및 공적장기간병보험의 개호상태를 보장한다. 3대 질병 보장부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만 51세 미만이며, 보장시점은 만 75세 생일이 속한 말일까지이다. 만 7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본형 보장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44) 일본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https://www.jhf.go.jp/about/organization/message.html>)

45)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는 동일함

46) [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

- 대출 신청 시 청약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 가입 신청 기한은 모기지대출 계약 수속 시점까지이며, 모기지 상환 도중에 가입할 수 없음(건강상태 고지와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 비용 및 검사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대출금액 5,000만 엔 초과 차입자가 3대 질병 보장부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검진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보험 가입금액 상한은 1억 엔으로 제한함
- 보험료는 매월 대출 상환금에 포함하여 납부함
- 보험료는 고객의 모기지대출 잔액에 따라 매년 납부함
-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탈퇴 처리하고, 이후 재가입이 불허함
-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 아님

〈표 II-24〉는 차입자가 선택한 단체신용생명보험 유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리 수준이다. 2017년 10월부터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보험요율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켰는데, 단생의 경우 대출금리에 보험요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타 급부 부가 시 (대출금리 +  $\alpha$ )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부 연생, 3대 질병 부가 시 각각 0.18%, 0.24%를 추가한다.

〈표 II-24〉 일본 '플랫35' 단체신용생명보험 유형별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단체신용생명보험(단생)	플랫35 대출금리
단체신용생명보험(부부 연생)	플랫35 대출금리 + 0.18%
3대 질병 부가형 단체신용생명보험	플랫35 대출금리 + 0.24%

자료: '플랫35' 안내자료([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SUB13](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SUB13))에서 저자가 작성함